

5. 相續稅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2,993号 1990. 5. 1公布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의2. 건물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으로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

제5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할 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등의 기준시가로 한다.

제5조제7항(중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2항제1호나목에서 “배율방법”이란 함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

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⑧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과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건물에 관하여 적용하는 특정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중 건물에 관하여 적용되던 특정지역으로 정한 지역(이하 이 항에서 “특정지역”이라 한다)이 제5조제2항제1호의2나목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이항에서 “지정지역”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은 이를 지정지역으로 본다.

◇相續稅法施行令 改正理由

相續稅 또는 贈與稅의 課稅標準을 現實化하기 위하여 時價를 算定하기 위하여 어려운 相續 또는 贈與財產의 評價基準

을 地方稅法上の 課稅時價標準額에서 地價公示 및 土地 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에 의한 公示地價 등으로 變更함으로써 相續 또는 贈與로 인하여 無償으로 移轉되는 資産에 대한 評價方法을 개선 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가. 相續 또는 贈與財產을 評價함에 있어서 時價를 算定하기 어려운 土地의 경우 그 評價基準을 地方稅法上の 課稅時價標準額에서 地價公示 및 土地 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에 의한 公示地價로 變更함(令 제185條第2項第1號가目)

나. 相續 또는 贈與財產을 評價함에 있어서 時價를 算定하기 어려운 建物의 경우 그 評價基準은 이를 地方稅法上の 課稅時價標準額으로 하되, 國稅廳長이 지정하는 地域안에 있는 아파트 등 共同住宅 및 特殊用途用建物에 대하여는 國稅廳長이 評價·告示한 價額을 評價基準으로 하도록 함(令 第5條第2項第1號의2 나目).

다. 이 施行令의 改正으로 變更되는 評價基準은 贈與財產에 대하여는 이 令 施行日 이후 贈與되는 것부터, 相續財產에 대하여는 1991年 1月 1日 이후 相續開始되는 것부터 適用하도록 함(令 附則 第2項).